개정안에 대한 토의 내용 및 결과

I. 개념적 정의

- 직능 수준(skill level)
 - 기본적인 변동은 없음
- 직능 전문화(Skill specialization)
 - 용어 중에서 function은 수학적인 용어인데 적절한 표현인지 검 토가 필요
 - 4가지 요소(factor)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로(mainly) 4가지 요소라고 정의해야 적절함
 - 미국 같은 경우 실제 조사에서 40%정도가 메니저로 조사될 만큼 문제가 있음

○ 직능수준 신규 부여

- 〈 개요 〉: 예전에는 부여하지 않았던 대분류 O과 1에 대하여 대 분류 O 군인은 장교와 일반군인으로 구별하여 장교는 직능수준 4, 일반군인은 직능수준 1로 부여하고 관리자에 대하여는 11-13 은 직능수준 4, 14는 직능수준 3을 적용
- 대분류 0에 대하여 일반군인의 경우, 직능수준 1보다는 2가 적절하다고 스웨덴 등의 국가에서 주장함 대부분의 국가가 직능수준 2가 적절하다다는 데 동의
- 대분류 1에 대하여 대기업 등의 관리자 등이 포함되는 12 법인 관리자의 직능을 3으로, 14 호텔, 판매 등 관리자를 직능 3을 적 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 일치
- ⇒ 여러 국가에서 직능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면 지금 이 시점에 서 조금이라도 개선을 해서 발전안을 내 놓아야 함. 그러나 많

이 변경 시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데 동의. 이에 ILO에서는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자료를 생산토록 하는 것 이라고 함.

○ 직능 수준별 개념 정의 및 검토

- 직능수준의 개념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지만 단계별 경계를 좀 더 명확히 하고 특정한 직업의 경우에 공식교육이 직능수준을 측정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사항을 언급

Ⅱ. 주요 현안 직업들에 대한 토의

< 보건서비스 관련 직업 >

- 토의 배경 및 문제점
- 보건서비스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WHO에서 동 직업의 분류와 관련하여 세분된 자료의 필요성과 분류의 세분화작업을 ILO에 요청함
- 아울러, 보건서비스직업에 포함되어 있는 간호사 등이 각 국가별 요구되는 직능수준이 다름에 따라 직능수준 적용상 대표적인 문 제 직종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과 세분화를 동시에 검 토하게 됨
- 또한 WHO에서는 ICD와 조금이라도 연계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서 가능하면 세분하여 줄 것을 요구

○ 검토사항

- 구분류에서는 간호사가 직능수준이 국가별로 다른 경우 2 전문가 나 3 준전문가에서 선택적으로 분류하도록 하였으나 신분류에서 요구되는 공식교육수준보다 직무내용(task, duty)이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대다수의 나라에 의해 직능수준을 결정하며 똑같은 직 무내용을 가진 직업은 항상 똑같이 적용토록 함

- ⇒ 이러한 사항에 대한 일반원칙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
- 일반의와 전문의의 명확한 구별과 정확한 명칭이 필요
 - ⇒ 일반의가 전문의가 되는 것인지와 practitioners를 doctors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
- 간호사는 책임성의 유무에 따라 본인이 책임을 지고 업무를 수행하면 전문가(대분류 2)로, 그렇지 않고 간호사를 지원해 주는 사람이면 준전문가(대분류 3, 이 경우에도 의사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를 보조해 줌)
- 전통의학 및 대체의학의 분류와 관련하여 전통의학은 점쟁이나 신앙치료 등 국가별로 다를 수 있고 종교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 레벨의 분류에서 적용할 사항이고 국제분류에서 는 침술 등을 의미하지만 침술 등 치료도 국가 레벨의 분류에서 적용하는 것이 적절
- 물리치료사와 메카니컬 엔지니어 구별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독일 등)에서는 구별이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구별이 가능하며 어쨌든 규모가 작더라도 보건서비스건 엔지니어(대분류 7)건 별도로분류는 존재하여야 함(ILO)
-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이익단체 등은 해당 직업을 사회적으로 인 정받기 위하여 직능수준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경향이 있음

< 정보통신기술 >

- 토의 배경 및 문제점
 -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의 정보통신산업의 신설과 WPISS의 정보 통신 관련 직업을 별도로 분석할 수 있는 분류체계 설정과 특수 분류 설정 요구

- 산업의 특성상 급격하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직업들이며 분류 전문가들이 정보통신직업 관련 분류를 세부적으로 구체화하 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정보통신산업 전문가 그룹이나 직접 연관되어 있는 국제 정보사회에 관한 워킹그룹에 자문을 받아서 분류가 구체화 됨

○ 토의사항

-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응용프로그래머의 구별이 쉽지 않으며 시스 템 테크니션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음
- ⇒ 명확한 구별을 위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함
- IT와 CT의 구별은 가능한지와 분류하는 것이 유용한지에 관하여 구별은 가능하지만 국제분류에서는 구별할 필요 없다는데 의견 일치
- 7421 전자조립원(Electronic fitters)과 7422 전자 기능공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Electronic mechanics and services) 구별이 곤란하므로 통합하자는 의견 제시(스웨덴, 독일)
- 현행 분류는 ICT 관련 직무에서 제조업분야는 관리자로 너무 편 협되어 있고 정의도 문제가 있는 듯함(UN)
- ICT 관련 직무의 산업과의 연관성과 카버리지 측면에서 산업은 반도체, 음향 및 유무선 통신기기, 다이오드 등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큰 반면, 제조업에서는 관련 제조업의 직업이 없으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7421 세분류 하나밖에 없음(우리나라)

< 농림어업 >

○ 토의 배경 및 문제점

- 구분류에 의해서 농림어업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많은 문제 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나 관련 기관, 특히 FAO로부터 제기되었 고,
 - · 구분류에서 『생산 및 운영부서 관리자』와 『농림어업 관리 자』의 구별이 사실상 어려움
 - 대분류 1의 농장관리자와 대분류 6의 시장지향의 자영농운영자
 의 숙련농업종사자의 구별이 중요하지만 구별이 어려움
 - · 대분류 6 숙련농업종사자와 대분류 9의 단순노무 농업종사자의 구별 어려움
 - · 생계형 농업종사자가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개발도상국의 분류 가 곤라
 - 생계형 농업종사자와 농업임금근로자의 구별 곤란

○ 토의사항

- 소기업농의 자영업자에 대하여 "숙련농업종사자", "감독자", "관리 자"의 구별을 명확히 함
- ⇒ 상당한 규모의 직원을 고용하면서 기획업무를 주로 담당하면 관리자, 어느 정도 업무에 가담하지만 주로 하는 일은 감독 즉, 해고, 통제 등의 업무를 주로 하면 감독자, 자기가 직접 직원을 고용하고 있지만 주로 농사일에 가담하는 부분이 크면 "숙련농업종사자"로 규정
- 612 시장지향 동물사육 및 관련 종사자 밑의 세분류는 FAO에서 세분한 것은 너무 세분되었으며 일부를 통합할 필요 있음
- ⇒ 낙농업 종사자를 제외하고 질의서에 포함하여 국가별 특성을 알 아보는 것이 바람직(UN)

- 생계형 농업 종사자의 분류는 많은 나라에서 불필요한 분류이지 만 몇몇 국가들의 의견을 존중할 필요 있음
- 아프리카나 남미 등 일부국가에서는 UNDP나 세계은행 등에 자료를 제공해야 하므로 유용함(바바도스)
- 생계형 농업에서 임업 관련 생계형 농업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음(ILO)
- 양식업 종사자와 내륙 및 해안어업종사자를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제표준산업분류에서는 구별되며 FAO에서도 구별의 필요 성을 강조했던 사항임

Ⅲ. 2차 잠정분류 체계에 관한 토의

□ 일반적인 문제

- 분류구조가 적절한지와 너무 세분되거나 옳은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 대분류를 기준으로 서비스 부문에 비하여 제조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7 수공예 및 관련 업무 종사자와 대분류 8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이 너무 분류구조가 복잡하고 분류수가 많다는데 의견 일치
 -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가 시대 흐름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 세인데 너무 많음

○ 분류코드번호 부여

- 분류 코드번호는 맨 마지막 기타의 직업을 분류시 소분류에서는 "기타 분류되지 않은 ***"으로 명명하고 세분류에서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으로 모든 분류에 명칭의 통일을 기함

□ 대분류 1의 『관리자』의 재편관련

- 기존의 일반관리자와 법인관리자를 법인행정관리자, 생산 및 전문서비스 관리자, 도소매 판매 관리자 등으로 구별한 것은 적절하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
 - 시설관리자는 법인행정관리자내에서 분류되어야 하나 빠져 있으며 어디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음. 독일의 경우 시설관리자(빌딩관리 포함)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빌딩 및 시설 서비스 관리자의 세분류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주장
 - ⇒ 시설관리자는 1120 회사 최고관리자에 포함되어 있음
- 14 음식숙박·도소매와 관련 서비스를 별도로 분류하면서 직능수 준을 달리(직능수준 3)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약간 의견이 불일치
 - ⇒ 규모가 큰 호텔의 최고 관리자는 11 고위관리자에 포함, 백화점 shop 매니저는 142 상점 매너저에 분류되며 은행 지점장등 의사결정이 없는 사람은 14내에서 분류
 - ※ 그러나 금융지점관리자가 14 음식숙박·도소매와 관련 서비스 내에서 분류되는 것이 적절한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으로 생각되며 직능이나 직무형태로 보아 13보다 14가 적합하 다면 중분류 14나 소분류 143 소매 및 관련서비스 관리자 명 칭을 바꾸는 것도 고려(공식의견은 아님)
- ILO측에서는 중분류 13과 14를 구별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대중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직업은 14로, 대중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은 직업은 13으로 분류함. 그러므로 14에 분류되는 직업들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관리자이고 13에 분류되는 직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체의 관리자들이 분류됨. 또한 143의 대부분(금융포함)이 직능수준면에서는 4보다는 3에 가깝다고 함

□ 감독자

- 감독자를 피감독자와 별도로 구별하여 분류할 것인지 구별할 필 요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 미국의 경우 조사표에서 슈퍼바이저/매니저를 하나로 묶어 별도로 구별하지 않고 조사를 하므로 구별할 수 없으나 ESCO-88을 좀 더 개선되어 분류의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함
 - 전체 분류에서 감독자가 너무 많아지는 측면이 있으며 분류구조 에 대한 프랑스 코멘트가 옳음
 - ※ 중분류 평균이 3.6, 소분류 3.5
 - 대분류 3 준전문가에 감독자를 신설하는 문제는 검토가 되어야 하나 311 물리 및 엔지니어링 과학 준전문가에는 이미 번호를 부여할 수 없음
 - 청소감독의 경우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금융업이나 제조업, 건설업에서 감독직의 중요한 의미가 있음.
 - 특히, 미국의 경우 제조업에서 감독자가 별도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조사 시 감독자가 전부 메니저로 조사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과 세부 설명을 포함하여 감독자를 별도로 세분하여 분류 할 것을 주장
- 감독자에 대한 분류번호를 부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 현재 개정 잠정안 분류에서는 일관성이 없이 마지막 번호가 1번 3번 또는 9번 등으로 분류되어 있어 논리성이 결여됨. 따라서 감독자의 번호가 1번이나 9번 등으로 똑같이 분류되도록 통일을 기함
 - ⇒ 2차 질의서에 추가적으로 포함키로 함

○ 결론적으로 감독자 분류를 별도로 하며 번호는 일관성 있게 부여하되 제조업이나 청소 감독 등 필요한 분야에서 감독자의 분류를 신설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함 단, 질의서에서 국가별 practice를 확인하여 진행

□ 예술, 디자인 및 스포츠 관련 직업

- 구분류에서 준전문가에 포함되어 있던 TV 아나운서, 음악가, 작가 등을 현대 예술 실상을 반영하여 전문가로 이동시킨 것에 대하여 적절성을 검토
 - 댄서, 음악가 등을 각각 다르게 분류한 것은 좀 이상하나 소분류 에서 245 창조 공연 예술가 및 작가를 소분류로 한 것은 적절함
 - 3451 포토그래퍼와 2457 저널리스트는 직능수준이 확연히 다름. 즉 포토그래퍼는 사진사라고 할 수 있지만, 저널리스트는 TV나라디오 저널리스트나 정치적인 사설이나 신문 등의 사설을 싣는사람들임
- 실내디자이너, 장식가는 예전대로 준전문가에서 분류하고 스포츠 업무 종사자도 준전문가에서 소분류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질의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국가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검토 필요

□ 중분류 41 사무종사자 검토

- 규모가 큰 일반 사무원의 분류가 적절한지에 대하여 검토
 - 미국의 경우 센서스 조사 결과 300만명, 독일은 200만명, EU국 가는 1,400만명에 이름

- 기존의 분류에서 secretary(일반 행정사무원) 및 자료입력 사무원을 명칭을 변경하고 secretary는 일반과 전문으로 구별하여 전문화된 비서업무는 334로 행정전문 secretary로 구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되므로 국가별로 분 류 현황 및 조사 현황 등을 질의서에서 검토 필요

□ 52 판매종사자의 분류 검토

- 판매종사자 중 소분류 521은 개정잠정안에서 새로 신설한 분류 로서 기존 대분류 9 단순노무자에 분류되었던 노점 음식 판매원 및 음식 외 기타 상품 판매원을 모두 대분류 5로 편입 52 판매 종사자내에서 분류
 - 직무 유형이 같은 판매 종사자를 하나의 대분류에 모은 것은 적절하며 조사 또한 쉽게 될 수 있음.
 - 그러나 판매원을 소분류에서 묶으면서 세분류에서 굳이 음식판매 원과 비음식판매원으로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 522 가게 판매종사자를 두개의 소분류로 나누면서 "감독자"와 "판매보조원"으로 나눈 것과 523 기타 판매 종사자에서 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5231 패션 및 기타 모델과 5232 Demonstrator(홍보요원)을 직접 판매종사자와 같이 분류한 것은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야 할 사항임(ILO의견 아님)
 - ⇒ 5231과 5232를 하나의 소분류에서 "판매 및 판촉(홍보) 관련 종사자"로 명칭을 부여하여 별도로 분류하는 방법 검토
- 전자상거래 판매원은 어디에 분류되는지에 관하여는 5234 컨택 센터 판매원으로 봄

□ 대분류 7(기능원)과 8(기계조작원)의 분류 검토

-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산업이 현대화 및 기계화됨에 따라 현재 대 분류 7과 8이 일부 구별이 곤란하게 되는 경향이 있음
 - 대분류 7과 8을 하나의 대분류로 통합하는 것도 검토되었으나 현행상태로도 하위분류가 너무 많아 불가능함
 - 7113 쇄석 절단, 분쇄 및 조각 등도 최근에는 모두 기계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대분류 8과 통합하는 것에 대한 검토 필요
 - 7223 기계수공구 조립자 및 조작자를 대분류 8과 통합 필요성 제기
 - ⇒ 그러나 이러한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토의는 하지 않았음
- 서비스 부문의 분류에 비하여 제조업 부문이 상대적으로 너무 세 분되어 있어 대분류 내에서나 대분류간에서도 통합이 필요한 직 업 검토
 - 대분류 7에서 7931 섬유 준비공, 7932 직조 및 편조 관련업무 종사자, 7332 직물, 가죽 관련 재질의 수공업자를 통합하도록 결정
 - 7321와 7324이 서로 유사하므로 통합 검토
 - 대분류 7과 8에서 감독자가 너무 많이 분류되어 있으므로 감독 자 분류를 줄일 필요 있음
- 용어가 명확하지 않거나 혼란의 소지가 있는 용어 변경
 - mechanic이나 fitter는 해석상 다르게 해석되거나 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repair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
 - 7324 Medical and dental related technician에서 technician은 준전문가의 technician과 혼돈우려가 있으므로 사용 제한

※ 우리나라에서는 치과기공소가 전문가에 포함되어 있어 국제분류 와 다르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 단순 노무종사자가 사실상 너무 세분되어 있는 데 선진국 등에서 는 큰 의미가 없으나 후진국에서는 비중이 상당히 크므로 분류를 줄여야 할 것인지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짐
 - 회원국들은 대부분 분류수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모 아졌으나 다른 나라의 의견을 듣고 너무 복잡하여 조사가 어렵 거나 921 농림어업 노동자처럼 너무 세분되어 오히려 조사가 안되는 분류들은 통합을 검토하자는 데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 집
 - 중분류 91과 94 통합의견 제기되었으나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음

Ⅳ. 특수분류(대체안으로서의 견해)에 관한 토의

- 직능과 관계없이 주요 관심부문에 대해 직무(skill-specialization)에 따라 기본분류를 재정렬하여 분류한 것으로 1차 회의에서 제기된 12개중 필요한 교육, 운송 등 불필요한 분야는 제외
- 특히, R&D(연구개발) 관련 직업과 관련하여 OECD에서는 연구 개발직을 특수분류 뿐만 아니라 기본분류에서도 필요한 경우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 그러나 대부분의 회원들이 연구직은 어느 분야에든 다 존재하고 조사가 어려우므로 별도의 기본분류 설정은 물론이고 질의 서에 포함하는 것조차 기본구조가 달라질 것을 우려하여 반대.

우리나라는 연구직과 관련하여 전문가와 준전문가를 구별하는데 조사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좀 더 구체화 할 경우 좀더 명쾌한 기준이 제시될 수 있으므로 OECD제안에 동의함

- ※ 연구직에 대한 별도의 분류가 설정되거나 특수분류 형태의 분류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사시 조사 지침서 등 에서 기준을 정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생각됨
- ICT 직업분류와 관련하여서는 관련기관인 WIPPS 자문을 다시 구하고 보건직업 분류와 관련하여서는 WHO에서 David가 프리 젠테이션 및 토의과정을 거칠 예정임

V. 2차 질의서에 관한 검토 및 보완사항

- 감독직 분류 중 어떤 분류를 통합 또는 삭제를 하고 신설해야 할 감독직(청소감독 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코드부여는 어 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에 현금출납원(주유소 근무자 등)을 어느 정도까지의 업무로 한정할 것인지?
- 일반사무원과 기타 사무원의 구별을 각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 판매 종사자 이외 각 직업과 관련하여 각 국가에서 별도로 분류 하여야 할 직업이 있는지?
- 전통적 건물 건설자와 비전통적 건물 건설자의 구별이 유용한지?
- 시스템 테크니션이 필요한지?
- 내륙수상 어업종사자와 심해어업 종사자를 구별할 것인지?
- 7223 기계수공구 조립자 및 조작자를 대분류 8과 통합한다면 어디에서 분류할 것인지?
- 91 청소원 및 도우미, 94 음식준비 보조원을 통합할 것인지?

※ 원칙적으로 질의서에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추후에 집계 및 분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견을 작성하는 각 국가에게도 큰 부담이 되므로 가능한 최소화하자는 데 동의

Ⅵ. 기타 토의사항

< 색인어 검토 >

- 각 국의 직무형태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색인어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
 -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국가에서 사용하는 명칭이나 해석, 직 능수준 등의 차이에 따라 각양각색이므로 극히 제한적으로 참고 사항으로만 사용하여야 함(독일 등)

< 행정사항 >

○ 개정작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한되어 있는 한 두사람으로는 어려우므로 ILO에서는 누군가가 자원해서 일정기간동안 개 정작업을 지원해주기를 바람

VII. 국제 분류 개정 향후계획 및 일정

- 2차 질의서 최종안 작성 및 검토의뢰 : 2006. 8월중순 ~
- 2차 질의서에 대한 검토의견 요약 및 분석: 2006. 10월
- 3차 ISCO/TEG 회의 : 미정(개최시 11월~12월중)
- 유엔통계위원회 상정 : 2007.3
- ILO 3자간 전문가회의를 위한 자료준비 : 2007.3~6
- 분류해설 및 가이드라인등을 위한 준비 : 2007.6~12
- 상위분류 정의 검토 : 2007.5~7
- 개정안 프랑스어 및 스페인어 번역: 2007.7~2008.2

- 전문가그룹회의에 이은 ILO 3자간 전문가회의 : 2007.12
- 전문가그룹회의에 이은 ILO 3자간 전문가회의: 2007.12
- 최종확정 및 발간 : 2008.1~6
- 센서스 적용 : 2010

붙임

2차 ISCO/TEG 아젠다

□ 2006. 7. 10(월)

09:00 - 09 : 30 등록

09:30 - 12: 30 오전 세션

- 개회, 소개 및 아젠다 채택
- 진행현황, 그룹에 대한 업무계획 및 방법 검토
- 개정분류에 대한 개념적 정의 및 골격과 직업개념의 영역

14:00 - 17: 30 오후 세션

- 보건관련 직업
- 정보통신기술 직업
- □ 2006. 7. 11(화)

09:30 - 12: 30 오전 세션

- 농림, 어업관련 직업
- 공식코멘트를 위해 제공될 질의서와 수정된 분류구조
- 일반적인 사항: 너무 많이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충분한지. 분류 가 너무 자세하게 세분되지 않았는지, 회의에서 더 좋게 수정해 야할 사항은 무엇인지? 중분류와 소분류체계는 적절하게 분류되 었는지?
- 대분류 1의 재검토
- 감독자

14:00 - 17: 30 오후 세션

- 예술, 디자인 및 스포츠
- 중분류 41 일반사무원의 재검토
- 판매원 52의 중분류 재검토
- 대분류 7, 8의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변화에 대한 우려
- 기타 관심사항 및 제안

□ 2006. 7. 12(수)

09:00 - 12: 30 오전 세션

- ISCO-88 변경안에 대한 2차 질의서
 - 잠정안에 포함된 질의서 검토
 - 앞의 이틀동안 토의로부터 제기된 추가적인 항목

14:00 - 16: 00 오후세션

- 토의내용 검토, 13, 14일 워크숍에서 언급되어져야 할 문제들